

2016학년도 마일리지 운영 관리 지침(안)

제정 2016. 4. 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착과 동기부여를 위한 학生活동의 성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우수학생 포상, 해외어학연수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및 대학의 장학금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체계)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학내·외의 활동(참여, 봉사, 수상, 체험 등 비교과 활동) 등의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인정한다.

제3조(마일리지 인정 및 기준)

① 인정 활동

영 역	프로그램 예시
참여	대학(교수학습센터, NCS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취창업정보센터, 대학신문사, 대학방송국, 도서관 등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, 강연회, 강좌, 세미나, 박람회, 전시회, 작품전, 발표회, 공모전, 경진대회, 프로그램 등
봉사	대학(사회봉사센터 승인), 공공기관(1365자원봉사센터, vms사회복지자원봉사 등) 및 공익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등
수상	대내외 공모전, 창업, 경진대회 등 수상
체험	대학(취창업정보센터 등 대학의 승인)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, 문화기행, 해외여행, 국토대장정 등

② 마일리지 기준

-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활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인정 단위와 마일리지를 결정한다.
- 참여 활동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한다(1시간 기준 1점). 단, 활동성격에 따라 학기, 참여횟수 등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.
- 학과가 주관하는 MT, 답사, 견학, 특강 등은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.

제4조(점수 배점)

-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 세부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다.

마일리지 점수 배점표

영역	항 목	활 동 영 역	부여 점수	최대 인정
참여	대학 주관 프로그램 참여	◦ 각종 행사, 강연회, 강좌, 세미나, 박람회, 전시회, 프로그램(상담자원 등) 등 참여	1/시간	100점
		◦ 각종 작품전, 발표회, 공모전, 경진대회 등에서 발표, 작품 제출	10/회	
	대외 프로그램 참여	◦ 대학에서 인증하는 학외 행사, 박람회, 전시회, 프로그램 등 참여	5/일	
		※ 학과 주관행사인 MT, 담사, 견학 등 제외 ※ 1일 10점이상 적립 불가		
봉사	자원봉사	◦ 사회봉사센터, 1365봉사센터, vms사회복지봉사 및 공익적 자원봉사 등 참여	1/시간	100점
	해외봉사	◦ 대학에서 승인하는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, 코이카 해외봉사 등 참여	5/일	
	기증	◦ 현월에 참여	4/회	
수상	대내외유공	◦ 각종 대회 공모전, 경진대회 등의 수상자 〈국제급〉 - 1등급 : 대상 - 2등급 : 최우수상 - 3등급 : 우수상 - 4등급 : 기타	100 75 50 25	200점
		〈전국급〉 - 1등급 : 대상 - 2등급 : 최우수상 - 3등급 : 우수상 - 4등급 : 기타	50 35 25 10	
		〈도/시급/대학〉 - 1등급 : 대상 - 2등급 : 최우수상 - 3등급 : 우수상 - 4등급 : 기타	25 20 10 5	
		◦ 해외 교육/문화기행, 배낭여행, 일반여행 등 참여	10/회	
		◦ 국토대장정, 교내외 취업캠프(2~3일) 등 참여	5/일	
체험	해외체험	◦ 해외 교육/문화기행, 배낭여행, 일반여행 등 참여	10/회	100점
	취업캠프	◦ 국토대장정, 교내외 취업캠프(2~3일) 등 참여	5/일	

2. 영역별 우수 학생에게는 졸업시 총장명의 인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 및 장학금 기준)

1. 장학금 지급은 교학처에서 학년 단위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지급 대상은 재학생에 한하며 장학금액 및 인원수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.
3.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다.
4. 장학금 취득자의 경우 취득 마일리지는 소멸 처리되나 재학 중 누계 관리에 포함한다.
5. 학년 종료 후 마일리지는 소멸된다.
6. 장학금 지급재원 부족시 총장명의 포상 및 해외어학연수 선발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학과별 배려 등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

1.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지침은 2016. 4. 1 부터 시행한다.